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목 차>

1. 승인을 요하는 기술수출·합병 등의 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2.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권한임
	담당부서(과)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강감찬		연락처	044-203-4854
	과장	최성준		이메일	artemis@mail.go.kr

2023. 6. 1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무역안보정책관

성명 강감찬 (서명)

*강감찬*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승인을 요하는 기술수출·합병 등의 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2.규제조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40조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 입법예고	2023. 6. 28. ~ 2023. 8. 7.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기술유출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이전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내외 모기업 인수를 통해 국내 기술보유기업을 간접인수하는 등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li> </ul> </li> <li>○ (정부개입 필요성)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국가핵심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정부가 검토하여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li> </ul>								
	7.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지능화되어 가는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li>○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시 그간 고시(산업기술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던 신고수리를 법에서 규정하고,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이행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함.</li> <li>○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li>○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신청 또는 신고토록 하고, 승인시에는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li> <li>○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td> <td>110여개 기관</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110여개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110여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외 모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기술보유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등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안보적·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했던 규제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li> <li>○ 이행점검, 이행강제금 신설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li> </ul>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11.영향평가 여부	주요내용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기존 법령에서 시행된 국가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산업·신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나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은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계획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제4호 신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p> <p>가.~다. (생략)</p> <p><u>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u></p> <p>마. ~ 자. (생략)</p> <p>2.~4.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 ----- ----- -----.</p> <p>가.~다.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u>라. ~ 아. (현행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u></p> <p>2.~4. (현행과 같음)</p> <p>5. <u>“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p> <p>6. <u>“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란 국가핵심 기술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이전하는 것을 말한다.</u></p> <p><u>가.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u></p> <p><u>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의 이전</u></p> <p><u>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전된 국가핵심기술의 재이전</u></p> <p><u>7.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함은 외국인이 당사자이거나 그가 관련되어 있는 인수·합병, 투자 거래,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외국인이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u></p> <p><u>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공동으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u></p> <p><u>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대상기관과 함께 대상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u></p> <p><u>1)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고 있는 국내·외 법인</u></p> <p><u>2) 1)의 법인에 대하여 자본출자 또는</u></p>

현행	개정안
	<p><u>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외 법인</u></p> <p><u>다. 대상기관등의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u></p> <p><u>라. 대상기관등 또는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와 대상기관등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체결</u></p> <p><u>마. 그밖에 대상기관등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이나 지배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p>
<p>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u>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lt;신설&gt;</p> <p>③ (생략)</p>	<p>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p> <p>-----</p> <p>----- <u>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u></p> <p>-----.</p> <p>② -----</p> <p>-----</p> <p>-----</p> <p>-----</p> <p>-----</p> <p>----- <u>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u>보유·관리</u>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⑤ (생략)</p> <p>⑥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u>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u>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p> <p>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p>	<p>④ ----- ----- <u>보유</u>하고 ----- ----- -----.</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수출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⑩ 국가핵심기술----- ----- <u>해당 행위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u> ----- ----- -----.</p> <p>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나</p>

현행	개정안
<p><u>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u></p> <p>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u></li> <li>3. <u>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u></li> </ol> <p>⑨ (생략)</p> <p>⑩ <u>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⑪ <u>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p>	<p><u>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u></p> <p>2. <u>대상기관이 제6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이행행위를 한 경우</u></p> <p>3. <u>대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어 수출한 경우</u></p> <p>4. <u>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⑨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제7항</u>----- ----- -----</li> <li>3. <u>제8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승인 및 허위신고 등에</u> ----- -----</li> </ol> <p>⑪ (현행 제9항과 같음)</p> <p>⑫ -----<u>제7항 및 제8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제10항의 사전검토</u> ----- -----.</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p>	<p><u>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은 해당 행위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u></p>
<p><u>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u></p>	<p><u>&lt;삭 제&gt;</u></p>
<p><u>2.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u></p>	<p><u>&lt;삭 제&gt;</u></p>
<p><u>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u></p>	<p><u>&lt;삭 제&gt;</u></p>
<p><u>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u>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인수·합병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u>1.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한 경우</u></p> <p><u>2. 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이 제5항에 위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의 이행행위를 하거나 그 이행행위에 협조한 경우</u></p> <p><u>3. 대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u></p>

현행	개정안
<p>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p>1. (생략)</p> <p>1의2. <u>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u></p> <p>2. <u>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심의</u></p> <p>3. <u>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u></p> <p>4. <u>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심의</u></p> <p>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u>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u>를 얻어 해외인수·합병등의 행위를 한 경우</u></p> <p>4. <u>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⑧ ----- ----- <u>외국인 또는 대상기관등</u> ----- ----- 1. (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2. <u>제6항에</u> ----- ----- -- &lt;삭제&gt;</p> <p>3. <u>제7항에 따른 부정승인, 허위신고</u> ---- ----- -----</p> <p>⑨ ----- ----- <u>제3항에</u> ----- ----- -----<u>장,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대상기관등의</u> ----- ----- -----<u>장,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대상기관등</u>----- -----</p>

현행	개정안
<p>⑫ 제1항의 승인,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⑪ ----- 제3항의 신고, 제6항 및 제7항의 중지·금지·원상회복, 제10항의 사전검토 ----- -----.</p>
<p>&lt;신설&gt;</p>	<p>제11조의3(이행점검)①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대상기관은 조건부과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대상기관등 또는 외국인은 조건부과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이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 제출 및 제3항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40조(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p>

현행	개정안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기술유출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할 필요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 최근 기술유출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어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이전\*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내외 모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국내기술보유기업을 간접 인수\*\*하여 기술에 접근하려는 사례 발생

\* 국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수출심사를 회피하거나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 등을 통한 기술이전에 대한 지적

\*\* 중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대상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상기관 지배 시도

○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사람→사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 통로 점검 등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시 부과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불법수출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국가핵심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정부가 검토하여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 국정과제 20-1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 핵심기술 유출방지 : 수출승인·신고제 개선, M&A 통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강화 추진

-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도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심사제도 및 외국인투자심사제도 지속 강화 중

◆ (국제동향)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은 ①기술 키우기 (Promotion)와 ②기술 지키기(Protection)에 정책역량 대폭 강화

\*  수출통제개혁법 제정(18), 투자심사강화(20),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22),  경제안보법 제정(22.5)

 AI·드론 등 23개 첨단기술 수출제한(20),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외국인연구인력 비자심사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1]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적용대상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조건부과 후 사후점검 미이행</li> <li>○ 해외인수·합병 심사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하지 않고, 국가안보위협에 대해서만 검토</li> <li>○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하더라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li> </ul>
규제대안1	대안명	승인을 요하는 기술수출·합병의 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기술안보포럼 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를 요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 사후점검</li> <li>○ 해외인수·합병 심사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li> <li>○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li> </ul>
규제대안2	대안명	승인을 요하는 기술수출·합병의 범위 확대(수정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를 요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의 범위 확대</li> <li>○ 해외인수·합병 심사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li> <li>○ 이행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는 하지 않음</li> </ul>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의 심사 대상 등 규제수준이 현행으로 유지되어 대상기관 및 정부의 부담 증가 방지	○ 제도의 부재로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차단 불가 ○ 사후점검 및 미이행시 행정제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효적 통제 불가
규제대안1	○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여 기술유출 방지 ○ 사후점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기술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대상 기관 및 행정기관의 부담 증가
규제대안2	○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여 기술유출 방지	○ 사후점검 및 미이행시 행정제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효적 통제 불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대기업)	'22.12.2, 과학기술회관 대상기업간담회(대면)	특별한 의견 없음	해당없음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중소·중견기업)	'22.12.5, 과학기술회관 대상기업간담회(대면)	특별한 의견 없음	해당없음
관계 정부부처	'23.5.20~5.30, 의견 조회공문시행	특별한 의견 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22.9월~'22.12월까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된 기술 안보포럼을 운영하여 마련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법 개정안(규제대안1) 마련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이전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
- 국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사례 발생

-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기술을 유출한 후 출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처벌 곤란
-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국내외 모회사 등을 인수하여 국내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유형은 통제 곤란
  - \* 중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대상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상기관 지배 시도('21)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이 지분을 투자한 사모펀드\* 등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외국인으로 규정하여 해외인수·합병시 심사할 예정
  - \* 국내 인수·합병은 사모펀드가 주도('21년, 85%)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을 인수하는 경우는 규제 불가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신청 또는 신고토록 하여 적대적 해외인수·합병으로부터 대상기관을 보호할 필요
- 승인시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과 함께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현행) 수출승인시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해외인수·합병시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만 검토
- 산업기술보호지침(고시)에서 규정하던 신고수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이행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할 필요
  - \* 수출신고 수리(제24조),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수리(제33조)
- 법률과 시행령 등에 산재되어 있던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허가시 조건부과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해외인수·합병 승인시 조건 부과(법 제11조의2)  
수출 승인시 조건부과(시행령 제15조, 산업기술보호지침 제20조)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수리시 조건부과(산업기술보호지침 제24조·제33조)

- 심사조건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에게 조건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바,
  - 신속한 원상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할 필요

### 3. 규제 목표

-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외 모 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기술보유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등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안보적·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 그간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했던 규제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 이행점검, 이행강제금 신설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 강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이번 법 개정은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고, 국가핵심 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켜야 할 기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임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기술보유 기업 간접 인수 등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산업기술보호법의 심사\*는 기술보호조치가 완비된 경우 허가 원칙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 인정
    - \* 최근 5년간 350건의 수출을 심사한 결과 기술보호대책이 미흡한 5건(1.4%)에 대해서만 불허하였으며, 2건은 기술보호대책을 완비한 후 재신청하여 허가
-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허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며, 신고수리의 경우도 그간 고시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입법한 것임
-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비례적 타당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법 개정안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규제자(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그 자체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통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별도 다른 차별적 규제 적용 곤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중소기업을 특정하여 분리 곤란</li> <li>○ 특히 기술보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업 자체적인 기술 유출방지책 마련 외에도, 본 법률안 적용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li> </ul>
④ 대상 업종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p>⑤ 예비분석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 필요</li> <li>- 해외합작법인 설립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 외국인·외국법인의 기술자료 요구시 산기법에 따른 심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 가능</li> <li>-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76.8)은 전체 평균(83.1)의 92.4%, 대기업(91.9)의 83.6%수준에 불과 ('22년 실태조사 기준)</li> <li>- 기술보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기술보호에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li> </ul> </li> <li>○ 유사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법)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음</li> </ul> </li> </ul>
<p>⑥ 차등화적용 여부</p>	<p>동 규제강화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적용 면제로 검토</p>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동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고용친화성) 검토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동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의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정보공개, 품질인증, 거래 가능한 권리 신설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 곤란

○ 일몰설정 여부

-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몰 규정 미적용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사전적용하여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기존 법령에서 시행 중인 국가의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나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대상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본 규제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개념 정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지정·고시하므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용될 사항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수익적 행정처분이 아닌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 이므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 아님
사후평가관리	미적용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나 사후평가 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규제샌드박스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① 해외사례

##### ① 외국인의 범위

- (미국, 연방금융법) ①외국 국적 보유자, ②외국 정부, ③외국기업, ④① ~③에 의해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단체
-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①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시민외 모든 자연인, ②미국에 법인이 없는 모든 기업·단체, 외국정부·기관
-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①비거주자 개인, ②외국에서 설립 또는 외국에 주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③위 ① 또는 ②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④조합 가운데 (i)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ii) 외국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⑤임원 50% 이상이 일본 비거주자인 법인

##### ② 기술수출 통제범위

-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①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밖으로 이전, ②관련 기술 및 소스코드를 미국내 외국인에게 공개·이전, ③ 재수출
-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비거주자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주자도 비거주자로 간주), ②특정 국가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 ③해외로 반출, ④기술의 전자 데이터를 외국으로 전송
- (중국, 수출통제법) ①국경 외로 이전, ②중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이전, ③중계 수출 또는 재수출, ④특허권 양도, 특허 실시 허가, 기술서비스, 기술이전

##### ③ 해외인수·합병(외국인투자) 통제범위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①미국 비즈니스의 중요한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근, ②미국 비즈니스의 이사회 또는 관리기관의 임원 지명권, ③주식의결권을 통하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④외국인이 투자펀드를 통해 미국 비즈니스에 간접 투자



- (미국, 연방금융법) ①외국인이 미국기업을 통제, ②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 ③법인 또는 자산의 일부를 외국인이 통제

#### ④ 사모펀드 규제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외국인이 투자펀드를 통해 미국 비즈니스에 간접 투자할 경우 심사

#### ⑤ 심사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외국인투자로 인해 야기되는 美 국가안보에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거래 당사자와 계약(NSA: nation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여 일정한 조건(Mitigation Measure)을 부과하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 미이행시 처벌

## 2] 타법사례

### ① 외국인의 범위

-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③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①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 대행기관, ④개발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대외투자 업무를 취급·대행하는 국제기구, ⑥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거주지국의 영주권 취득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4년이상 체류허가자, 4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의 체류허가자)

## ② 기술수출 통제범위

-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①국내에서 국외로 이전, ②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에게로의 이전, ③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④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⑤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 ③ 사모펀드 규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승인 대상

→ 해당 사모펀드의 유한투자자(LP, 내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 적용)가 30%이상을 가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규제

\* 예) 금융관계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융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등은 대주주 자격요건 미충족

## ④ 이행점검

-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수거 등을 명령하고 공표한 후 이행점검 실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시설·제조판매품목시설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조건이행 여부 점검

## ⑤ 이행강제금

-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제한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4. 비용편익분석 : 해당없음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해외합작법인 설립(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시 해외 파트너가 우리 기업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의 심의를 통해 기술을 보호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막중하므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 심사대상 확대 및 심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하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 피해를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핵심기술 심사업무 확대 및 이행점검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추가 발생

## IV. 추진계획 및 종합 결론

### 1. 추진경과

-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 (’21.12월, 관계부처 합동)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추진 방향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22.9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간주도 기술안보포럼 운영 (’22.9~12월)
- 대상기관 간담회(2회)를 통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22.12월)
- 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22.5월)

### 2. 향후 평가계획

-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대상 증가에 따른 심사건수 증가 등을 확인하여 기업들의 규제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
- 정기적인 이행점검 등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심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 3. 규제 정비계획

- 기술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신속 지원을 위해 기술유출가능성이 낮은 기술수출에 대해 심사면제·간소화 추진

법령명	규제조문	완화내용	추진일정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제4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제의약품 기술수출에 대해 포괄 수출승인제 신규 도입</li> <li>-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시 포괄 수출심사제(승인/신고) 신규 도입</li> <li>-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 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 정보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심사면제</li> </ul>	’23년 7월

#### 4. 종합 결론

-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외 모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기술보유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등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안보적·국민경제적 비용 최소화
- 이행점검, 이행강제금 신설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 강화
- 그간 시행령·보호지침(고시) 등에 규정했던 규제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규제에 대한 외부 검열 강화
- 지켜야 할 기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2.규제조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4조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 입법예고	2023. 6. 28. ~ 2023. 8. 7.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대상기관이 기술보유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기술수출시 심사가 필요함을 모르는 경우 기술유출방지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li> <li>○ (정부개입 필요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개별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국익을 지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제도미인지로 인한 기업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미리 제도를 알리고 기술을 관리하여 기업이 스스로 기술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li> </ul> </li> </ul>			
	7.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관련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li> <li>○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개선권고를 한 경우, 이를 확인·점검하고 개선권고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li> <li>○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도한 행위도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함</li> <li>○ 국가핵심기술 판정·기관등록·시정명령 등의 신설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li> </ul>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미인지 등으로 인한 불법 수출 및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 기업의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li> <li>○ 시정명령·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술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li> <li>○ 현행 제도로 처벌이 불가한 기술유출을 침해행위로 추가하고, 범죄구성요건확대(목적범→고의범)를 통해 처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li> </ul>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이미 기존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을 국가에서 권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받은 국가핵심기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유기관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산업·신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나 달리 규제에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적용할 대상은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계획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제4호 신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p>



현 행	개 정 안
	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p>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li> <li>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li> <li>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li> <li>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li> </ol>

현 행	개 정 안
	<p><u>아니한 경우</u></p> <p><u>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u></p> <p><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3조(개선권고)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제13조(개선권고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u>④ ----- 제3항-----</u>  <u>----- 시정명령을-----</u>  <u>명령의 -----</u>  <u>-----.</u></p> <p><u>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u></p>

현 행	개 정 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생 략)</p> <p>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p>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3.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p>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현행과 같음)</p> <p>1. ----- ----- 취득·사용·공개- ----- -----</p> <p>2. ----- ----- ----- 산업기술을 유출·사 용·공개하는 행위</p> <p>3.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소스코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p> <p>4.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산</p>

현 행	개 정 안
<p><u>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p>	<p><u>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u></p>
<p>4. <u>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p>	<p>12.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사용·공개하는 행위</u></p>
<p>5. <u>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u></p>	<p>6. <u>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u></p>
<p>6.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u></p>	<p>7. <u>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u></p>
<p><u>&lt;신 설&gt;</u></p>	<p>8. <u>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및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u></p>
<p><u>&lt;신 설&gt;</u></p>	<p>9. <u>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수리를 얻은 후 인수합병 등의 승인 및 신고수리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u></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6의2.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u></p> <p>6의3. <u>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u></p> <p>7. <u>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u></p> <p>8. (생 략)</p>	<p><u>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11. 제11조 7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6항·제7항에 -----</u> <u>-----</u></p> <p><u>13. (현행 제8호와 같음)</u></p>
<p>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 ②(생 략) <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 ②(현행 제1항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3. 3의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4. ~ 10. (생략)</p>	<p>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u>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3. 3의2. (현행과 같음)</p> <p><u>3의3. 제11조의3에 따라 조건이행에 대한 이행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u>3의4.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4. ~ 10. (현행과 같음)</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대상기관\*이 기술보유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기술수출시 사전심사가 필요함을 모르는 경우 기술유출 방지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
  -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후속조치가 불가하여 기술보호에 허점이 발생하므로, 사후점검·시정명령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적용대상 확대하고, 기술유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보호 및 관리현황을 확인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 알려서 기업이 스스로 기술보호를 하도록 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1]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현행유지(안)
현행유지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li> <li>○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개선권고만 하고, 사후점검은 하지 않음</li> <li>○ 일부 침해행위의 범죄구성요건을 목적성으로 유지하여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li> <li>○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하더라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도록 유지</li> <li>○ 실태조사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실시</li> </ul>

규제대안1	대안명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및 관리 체계강화(기술안보포럼 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관련 사항을 등록토록 함</li> <li>○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 기술자료 무단반출 및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침해행위에 추가</li> <li>○ 일부 침해행위의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여 처벌대상 확대</li> <li>○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국가핵심기술 판정·기관등록·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li> </ul>
규제대안2	대안명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의 범위 확대(수정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료 무단반출 및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침해행위에 추가</li> <li>○ 일부 침해행위의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여 처벌대상 확대</li> <li>○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li> </ul>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관이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판정신청을 할 수 있어, 보호조치·실태조사 등 법적 의무에 대한 부담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곤란으로 기술유출 가능성</li> <li>○ 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술유출 가능성</li> <li>○ 개선권고 미이행시 제재수단이 없어 기술보호에 허점 발생</li> <li>○ 침해사실이 의심되더라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기술보호현황 등 확인 불가</li> <li>○ 현행 제도로 처벌이 불가한 기술유출 지속 발생</li> </ul>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미인지 등으로 인한 불법 수출 및 불법해외인수·합병 방지</li> <li>○ 개선권고·시정명령·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술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li> <li>○ 현행 제도로 처벌이 불가능한 유출 행위를 침해행위로 추가하고, 제3차 유출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 및 정부의 부담 증가</li> </ul>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로 처벌이 불가능한 유출 행위를 침해행위로 추가하고, 제3차 유출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곤란으로 기술유출 가능성</li> <li>○ 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술유출 가능성</li> <li>○ 개선권고 미이행시 제재수단이 없어 기술보호에 허점 발생</li> </ul>

## ②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대기업)	'22.12.2, 과학기술회관 대상기업간담회(대면)	특별한 의견 없음	해당없음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중소·중견기업)	'22.12.5, 과학기술회관 대상기업간담회(대면)	특별한 의견 없음	해당없음
관계 정부부처	'23.5.20~5.30, 의견 조회공문시행	침해행위 확대(안 제14조)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법무부)	해당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22.9월~'22.12월까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된 기술 안보포럼을 운영하여 마련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법 개정안(규제대안1) 마련

- 기업이 기술보유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기술수출시 사전심사가 필요함을 모르는 경우, 기술유출 방지에 중대한 허점 발생하므로 국가가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S사, 제도미인지로 국가핵심기술인 국산 화물창 KC-1도면을 프랑스에 유출('19)

-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 보호에 취약하므로 정부가 이를 인지하게 하도록 할 필요
- 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통해 기술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술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
-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 및 필요시 시정명령 도입 필요
- 기술자료 무단반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이를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할 필요
  - \* A사의 前직원이 브로커(조선족)를 통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중국 유출
- 목적범\*에 한정된 범죄요건으로 무죄·집행유예 다수\*\* → 처벌 실효성 부족
  - \* 2016고단6150(2018.1.12.) 국가핵심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만 인정(산업기술보호법위반은 무죄)
  - \*\* 77건의 대법원판결 중 유기형 3건(4%), 집행유예 31건(40%), 무죄 28건(36%) ('18~'21)
-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

### 3. 규제 목표

-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법 수출 등을 방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술보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탄탄한 기술보호 환경 구축
- 범죄 구성요건 강화(목적범→고의범), 침해행위 대상 확대(기술무단유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 등을 통해 기술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강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 개정의 목적은 제도미인지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방지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켜야 할 기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임
  -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실태조사 강화는 규제로 인한 개별기업의 불이익(부담)보다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며, 기술관리의 공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 인정
    - 특히, 판정신청통지제와 보유기관 등록제는 제도미인지 등으로 인한 기업의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범죄구성요건을 확대(목적범→고의범), 침해행위 대상 확대(무단유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 및 국가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법 개정안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규제자(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그 자체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통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별도 다른 차별적 규제 적용 곤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중소기업을 특정하여 분리 곤란</li> <li>○ 특히 기술보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업 자체적인 기술유출방지책 마련 외에도, 본 법률안 적용을 통해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li> </ul>
④ 대상 업종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⑤ 예비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 필요</li> <li>-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76.8)은 전체 평균(83.1)의 92.4%, 대기업(91.9)의 83.6%수준에 불과 ('22년 실태조사 기준)</li> <li>- 기술보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기술보호에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례분석</li> <li>-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하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음</li> </ul>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신설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적용 면제로 검토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동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고용친화성) 검토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동 개정안은 판정신청통지, 보유기관등록, 침해행위 확대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정보공개, 품질인증, 거래 가능한 권리 신설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 곤란

○ 일몰설정 여부

-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기존 법령에서 시행 중인 국가의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일몰 규정 미적용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기존 법령에서 시행 중인 국가의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나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대상 아님

분류	적용여부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본 규제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개념 정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지정·고시하므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용될 사항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수익적 행정처분이 아닌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 이므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 아님
사후평가관리	미적용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나 사후평가 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규제샌드박스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① 해외사례

##### ① 보유기관 등록제

- (EU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장에 공급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함

##### ② 침해행위

- (미국, 경제스파이) ①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전달, ②①을 알고도 취득, ③①~②를 시도, ④①~②를 하려고 공모

#### ② 타법사례

##### ① 보유기관 등록제

-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② 시정명령

- (개인정보보호법) 보호위원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중지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③ 침해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①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 취득·사용 및 제 3자에게 누설, ②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 무단유출, ③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④영업비밀 부정 취득, ⑤①~④를 알고 영업비밀 취득·사용

## 4. 비용편익분석 : 해당없음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막중하므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보유기관등록 등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하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 피해를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추가 발생



## IV. 추진계획 및 종합 결론

### 1. 추진경과

-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안 마련 (’21.12월, 관계부처 합동)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추진 방향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22.9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간주도 기술안보포럼 운영 (’22.9~12월)
- 대상기관 간담회(2회)를 통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22.12월)
- 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23.5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2. 향후 평가계획

-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판정신청통지 및 보유기관등록을 시행할 경우 판정건수 및 대상기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권고 후 사후점검,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계획

### 3. 규제 정비계획

- 기술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신속 지원을 위해 기술유출가능성이 낮은 기술수출에 대해 심사면제·간소화 추진

법령명	규제조문	완화내용	추진일정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제4호 신설	- 완제의약품 기술수출에 대해 포괄 수출승인제 신규 도입 -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시 포괄 수출심사제(승인/신고) 신규 도입 -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 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 정보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심사면제	’23년 7월

#### 4. 종합 결론

- 제도미인지 등으로 인한 불법수출 및 불법해외인수·합병 방지하고, 시정 명령·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술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 현행 제도로 처벌이 불가능한 기술유출을 침해행위로 추가하고, 범죄구성 요건확대(목적범→고의범)를 통해 처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
- 지켜야 할 기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탄탄한 기술보호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